

南宋의 流民策에 관한 研究

金 容 完

目 次

- | | |
|----------------|----------------------|
| I. 緒 言 | IV. 兵員에의 充用 |
| II. 暫定的 措施 | V. 貴正官 및 貴正士人을 위한 對策 |
| III. 給田 및 諸 惠澤 | VI. 結 語 |

I. 緒 言

南宋時代는 中國 歷史上 어느 朝代에서도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없으리만큼 많은 數의 流民이 續出하였던 時期이다. 그 出現原因으로 南宋朝의 土地均等分配를 위한 對策의 未備에 기인한 少數인에 의한 土地兼併의 事實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보다큰 原因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 있었다. 즉 淮水以北地域이 異民族(女眞·蒙古)의 支配에 들어간 以後, 그 地域 居住의 漢人(歸正人)들이 그들의 壓政을 피해 끊임없이 大舉 南移하였으며, 沿邊地域(특히 兩淮·湖北) 住民들 또한 그들의 頻繁한 南侵을 피해 무리지어 他地域으로 流移한 데 主因이 있었다. 이러한 事實을 뒷바침할 만한 根據는 宋代의 官撰記錄이나 當時代를 살았던 사람들의 著述속에 散見되고 있는데, 流移民 集團의 規模가 컸던 한두 史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歸正人의 경우에 대해서 宋史 卷 407 楊簡傳에서

金人大饑, 來歸者日以數千萬計, 邊吏臨淮水射之.

라하였고, 同書 卷 406 崔與之傳에서도

初金人既弊, 率衆南歸者所在而有, ……

라하여 그 南來人 集團의 規模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沿邊地域 住民들

의 경우에 대해서도, 兩朝綱目備要 卷9 開禧2年 11月甲辰條에서

兩淮, …… , 土民奔逃渡江者十餘萬, …….

라하여 兩淮地域 流民의 具體的인 數를 언급하고 있으며, 宋史 卷174 食貨志 賦稅 紹興23年條에서도

荆南, 戶口十萬, 寇亂以來, 幾無人跡.

이라하여 荆南地域民의 流移實狀의 深刻性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南宋時 流民出現의 主要因이 어디에 있었던 가를, 그리고 그 流民集團의 規模가 如何한 것이었는 가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들의 流浪期間도 長期的인 것이어서, 그들이 南宋의 政治, 經濟, 社會 그리고 文化等 諸方面에 끼친 影響 또한看過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南宋史上에 있어서의 流民의 役割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大都市 發生 過程上에서의 役割(宋代 20萬戶以上の 都市는 全國을 통하여 北宋 政和元年(1111)까지 3個所에 不遇하였다. 그러나 그후 人口의 都市集中現狀을 보여 南宋 咸淳年間(1265-1274)까지 9個所로 增加하였다.¹⁾ 그 原因으로 商業經濟의 發達에 따른 農村人口의 都市集中도 無視될 수 없을 것이나, 보다 중요한 要因은 流移民의 集中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²⁾)
- ②荒蕪地 開墾上에 있어서의 貢獻(본 논문 Ⅲ章 참조)
- ③軍事方面에서의 貢獻(본 논문 Ⅳ 참조)
- ④文化方面에서의 貢獻

이와같은 役割은 前代에서 찾아보기 힘든 例로, 南宋史를 研究함에 流民問題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하겠다.

南宋의 流民問題는 이미 先學들에 의해 考究되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업적을 檢討해 보면 流民問題를 어떤 한 研究問題와 관련하여 間接적으로 取扱하고는 있으나, 이를 하나의 테마로 다룬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總體的인 整理가 要求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점에 着眼하여 앞서 “南宋流民에 對한 小攷”라는 題下에 拙稿를 내놓아,³⁾ 주

1) 梁庚亮, 南宋城市的發展(上) (食貨, 復刊 十卷 十期 所收), 中國歷史社會科學雜誌社, 台北.
2) YOSHINOBU SHIBA,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arket in the Lower Yangtze Valley (Crisis and prosperity Sung China, 所收), 虹橋書店, 台北.
3) 濟州大學校 論文集(인문학편) 第17輯, 1984.1.

로 南宋流民 出現의 原因에 대하여 살펴본바 있었다. 本稿는 그 後續作業인바, 연구의 범위는 南宋朝의 流民對策으로 限定하고자 한다.

II. 暫定的 措處

中國歷史上, 南宋朝만큼 流民들의 安住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努力을 기울였던 王朝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基因하는 것일까? 그 原因으로 우선, 宋朝가 統治理念의 根幹을 仁厚에 두었으며, 그 政府 또한 儒家思想의 影響을 받은 文人들로 構成되어 있어, 그 政治措施에 所謂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民有飢若己飢之, 民有溺若己溺之」라는 思想이 여지없이 발휘되었던 4) 점을 勘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宋朝의 統治理念의 要素는 且置하고라도 上述한 바와 같이 南宋時代에는 流浪民의 數가 그 어느 朝代에 있어서 보다 월등히 많았던 만큼, 그들이 糊口之策을 위해 叛徒化하게 되면 國家의 安危에도 직접적인 影響을 주게 되는 바, 이점을 더 念慮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貧患之民에 대한 對策의 未備로 그들이 叛徒化하여 國家의 安寧을 해쳤던 史例는 以前朝代의 경우는 접어두고서라도 北宋末과 南宋初年의 盜賊蜂起狀況에서 엿볼 수 있다. 즉 北宋末年에는 開國以來 累積되어온 諸弊端과 徽宗의 失政으로 民生이 漸次 困乏케 되자 各地에서 流民이 續出하였고, 그중 多數가 叛徒化하여 國家의 安寧을 해쳤던 바,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規模가 컸던 盜賊集團은 方臘과 宋江의 무리였다.⁵⁾ 小說 水滸誌가 이 時代의 社會的 狀況을 內容으로 저술되었던 점은 또다른 意味를 부여해 준다. 한편 南宋初年의 盜賊蜂起狀況이 얼마나 深刻하였던 것이었는가에 대하여는, 宋史 卷 358 李綱傳에

是時, 四方潰兵爲盜者十餘萬人, 攻劫山東·淮南·襄漢之間, …….

라하고 있고, 同書 卷 368 王彥傳에서

時, 中原盜賊蠶起, 加以饑饉無所資食, 惟蜀富饒, 巨盜往往窺覷, 桑仲既陷淮安·襄陽, 乘勢西向, 均房失守, 直擄金州白土關, 衆號三十萬.

라하고 있으며, 建災以來繫年要錄 卷 33 建災 4年 5月 甲辰條에서도

時, 江北·荆湖諸路盜益起, 大者至數萬人, 據有州郡, 朝廷力不能制. 盜所不能至者, 則以土豪潰將或攝官守之, 皆羈縻而已.

4) 王德毅, 宋代的養老與慈幼(宋史研究論集 第二輯 所收), 鼎文書局, 台北.

5) 陳邦瞻, 宋史紀事本末(三民書局, 台北) 卷 54 참조.

이라하고 있는 사실들에서 파악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流民의 安住 問題は 宋朝의 統治理念과도 관련있는 문제며, 더우기 國家의 安危에도 至大한 影響을 줄 수 있는 문제였던바, 南宋朝에서 그들을 위한 對策마련에 腐心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安着시키는 데에 總力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면 流民對策은 구체적으로 如何한 것이었을까? 다음에서 그 內容을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當時의 流民이라하면 內地에서 발생한 流浪民 뿐만아니라, 淮水以北地域에서 南移해온 歸正人까지 포함되었던바, 그 집단 전체 규모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유민문제 이외에도 山積해 있는 問題들로 苦心해야했던 南宋朝로서 일시에 이들 모두에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우선 臨時變通의 對策이 강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流民發生時 南宋朝가 그들의 當急의 生計를 위해 취한 措處중의 하나는 食糧을 支給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史實은 宋史 卷 28 高宗本紀五 紹興七年 正月 己巳條에서

發米萬石濟京東·陝西來歸之民.

이라하고 있고, 同書 卷 39 寧宗本紀二 嘉定二年 八月 丙戌條에서도

發米十萬石振兩淮饑民.

이라하고 있는 指摘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다. 그리고 寧宗 嘉定元年(1208) 九月 江·淮制置大使 司에 命하여 安邊所의 錢百萬緡으로 米穀을 구입하여 饑民을 구제하라고 하였던⁶⁾ 史實도 그 좋은 例라 하겠다. 이 경우 食糧의 支給은 어디까지나 無償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無償支給 이외에도 政府가 그들에게 米穀을 판매한 史例도 찾아볼 수 있는바, 그 사실은 宋史 卷 39 寧宗本紀二 嘉定元年 八月 甲午條에

發米三十萬 振耀江·淮流民.

라 언급되어 있고, 同書 卷 25 高宗本紀二 建炎三年 二月 戊辰條에

出米十萬斛, 卽杭·秀·常·湖州·平江府, 損直以糶, 濟東北流寓之人.

라 언급되어 있는 사실들에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아마도 어느정도 安着한 流民들에 대해 취해진 措處가 아닐런가 考慮해볼 수 있다.

한편 南宋朝의 流民들을 위한 救濟措處는 食糧의 支給이나, 판매에 限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 內容은 宗史 卷 178 食貨志 振恤에서

6) 宋史 卷 39 寧宗本紀二 嘉定元年 九月 壬子條; 出安邊所錢一百萬緡, 命江·淮制置大使司糶米振饑民.

高宗南渡，民之從者如歸市。既爲之衣食以振其飢寒，又爲之醫藥以救其疾病，其有隕於戈甲斃於道路者，則給度牒瘞埋之。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파악되어 질 수 있다. 즉 衣服을支給하여 그들을 饑寒으로부터 保護하였고, 醫療의 惠澤을 베풀어 疾病으로부터 救濟하였으며, 道中에서 戰傷으로 死亡한자에게는 度牒을 주어 埋葬케 하였던 것이다.

남송조는 이상의 措處들을 주로 常平食과 義倉을 통하여 시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당시의 流民集團의 規模는 매우 큰 것이었던 만큼, 政府의 貯蓄만으로 堪當될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富人들을 爵位나 賞으로 說得하여 流民救濟努力에 協助토록하는 施策도 썼던바, 그 사실은 宗史 卷 178 食貨志 振恤에서

紹興以來，歲有水旱，發常平。義倉，或濟或糶或貸，如恐不及，然當艱難之際，兵食方急，儲蓄有限，而振給無窮，復以爵賞誘富人，相與補助，亦權宜不得已之策也。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以上 流民發生時，南宋朝가 그들을 위해 마련하였던 對策에 關하여 살펴보았던바, 그것은 暫定的인 措處에 不遇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보다 恒久的인 對策이 講究되어야 했음은 너무나 當然한 事理이다.

Ⅲ. 給田 및 諸惠澤

南宋朝에서 流民의 恒久的인 安着을 위해 마련한 對策중의 하나는 無田의 流民에게는 田土 및 開墾資本을, 世業田이 있으면서도 부득이 流移한 者들에게는 그들이 歸業할 수 있도록 諸特惠를 提供하는 것이었다. 이는 當時의 社會가 農業을 經濟의 主軸으로 삼고있던 사회였던 만큼 社會的 與件과 附合하는 最上의 流民對策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그 具體的 內容을 整理해보기로 하겠다.

1. 無田의 流民을 위한 給田 및 諸惠澤

南宋政府는 國初以來 廣濶한 面積의 官田을 所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다음의 措處에 의한 것이었다. 즉 첫째는 戰亂으로 戶絶하였거나, 他地域으로 流移한후 歸業치 않는 者들의 田地를 國家所有로 하는 것이었으니, 紹興 2年(1132) 3月 10日 淮南東路提刑兼營田副使 王實

·被旨措置營田，勸誘人戶或召募軍兵請射布種。今相度先將根括到江都·天長縣未種水田一萬六千九百六十九頃，陸田一萬三千五百六十六頃，分撥諸軍趁時耕種。⁷⁾

라하여 江都와 天長縣內의 아직 耕作치 않는 水田 16,969 頃과 陸田 13,566 頃, 都合 30,535 頃의 土地에 軍을 分散, 耕種케 하자고 建議한 사실은 이 境遇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紹興 30年(1160) 正月, 淮南轉運判官兼淮南西路提點刑獄公事·提領營田 張初의

本路係官荒田共四十八萬餘頃，緣並江圩埠·近山陂塘，兵火後民間無力修築，乞從本司支官錢修築開浚，募人開耕，仍許百姓承佃⁸⁾。

라는 建議文 중에 보이는 「本路係官荒田共四十八萬餘頃」도 역시 이렇게 확보된 官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所有주가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힘써 開墾치 않아 荒廢화된 田地를 強制로 몰수, 官有로 하는 것이었으니, 그 근거는 宋會要輯本(以下 宋會要로 略稱), 食貨6 墾田雜錄 乾道 2年 5月 6日條 臣僚言에서

兩淮膏腴之田，皆爲品官及形勢之家占佃，既不施種，遂成荒田，乞自今如經五年不耕者，許民戶并諸軍屯田指射，官爲給據耕種。

라고 하였고, 同書 同卷 淳熙 5年 7月 12日條에 언급된 孝宗의 詔書에서도

若包占頃畝，未悉開墾，自今降指揮，日以二年爲限，限滿不能遍耕，官司拘作營田。

라하고 있는 사실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南宋朝가 無田의 流民에게 分配·耕作케 하였던 田地는 이렇게 확보된 官田인 것으로, 給田은 그 所有權의 歸屬與否와 經營方式에 따라 두가지 境遇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첫번째의 境遇는 政府 당국에 의해 직접 經營되는 集體的인 生産組織인 官莊田(營田) 혹은 軍莊田(屯田)을 分配하고, 國家와 佃人과의 관계를 地主 對 佃戶의 관계에 있도록 하는 境遇였으니, 그 給田의 實態는 다음과 같았다.

① 給田面積 ;

宗史, 卷 176 食貨志 屯田, (紹興) 6年 都督張浚奏에서

改江淮屯田爲營田，凡官田逃田，並拘籍以五頃爲一莊，募民承佃，其法五家爲保，共佃一莊，以

7) 宋會要輯本, 食貨 63 營田雜錄 紹興 2年 3月 10日條.

8)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164 紹興 30年 正月 壬寅條.

一人爲長，每莊給牛五具，耒耜及種副之，別給十畝爲蔬圃，貸錢七十千，分五年償。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같이 1戶當, 耕作地 一頃・菜田 10 畝(혹은 20 畝)가 기본이었다. 이 面積은 北宋 端拱 2年(989) 陳堯叟等이 주장한 面積의 倍가되는 面積이었다.⁹⁾

② 諸惠澤 ;

宋會要, 食貨 63 營田雜錄 紹興 6年 正月 28日條 都督行府言에

每莊官給耕牛五頭, 并合用種子・農器, 每戶別給菜田十畝. 先次借支錢七十貫, 仍令所委官分兩次支給, 分作二年兩料還納, 更不出息. …… 每莊蓋草屋一十五間, 每一家給兩間, 餘五間准備頓放斛斗.

이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파악될 수 있는 바와 같이, 南宋朝가 佃人들에게 提供하였던 諸惠澤으로는 耕牛・農具・種子・住屋・倉庫 等の 支給 그리고 營農資金의 貸與 等を 지적할 수 있다.

③ 租課의 徵收 ;

宋會要, 食貨 63 營田雜錄 紹興 6年 正月 28日條 都督行府言에

…… 課子, 除撥出次年種子外, 不論多寡厚薄, 官中與客戶中停均分.

라고 보이는 바와같이 次年の 種子를 除外하고 官과 佃人間에 各各 半分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同書 卷 63 紹興 6年 7月 28日條 都督行府言에서

訪聞開耕荒閑田土, 頗廢工力, 欲望將初年收成課子, 且令官收四分, 客戶收六分, 次年已後, 即中停均分, 今後請佃官莊並依此.

이라 하고 있는 바와같이 官對 佃人間의 배분 비율이 4:6인 경우도 있었다.

④ 組織 ;

宋會要, 食貨 63 營田雜錄 紹興 6年 正月 28日 都督行府言에

…… 每縣以十莊爲則, 每五頃爲一莊, 召客戶五家相保爲一甲共種, 甲內推一人充甲頭, 仍以甲頭姓名爲莊名.

라 하였고, 同書 卷 63 營田雜錄 紹興 6年 8月 10日條 司農少卿提領營田公事 樊資等 言에서도

9) 宋史, 卷 176 食貨志 屯田 端拱二年度支判官 陳堯叟等亦言 .. 漢・魏・晉・唐於陳・許・鄆・穎・豐・蔡・宿・亳至于壽春, 用水利墾田, 陳迹具在, 請選官大開屯田, …… 每屯十(千)人, 人給一牛, 治田五十畝, 雖古制一夫百畝, 今且墾其半, 俟久而古制可復也.

…… 每十莊召募第三等以上土人一名充監莊，先次借補守闕進義副尉，與免身丁，依軍中例支破券錢，候秋成日比較所收斛斗多寡，如合推賞，申乞補正。

이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같이 5家を 1 甲이라하여, 그중에서 선출된 一人의 甲頭로 하여금 그 甲내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다시 十莊마다 監莊을 두어 제반사무를 통할토록 하였다.

두번째의 경우는, 官田化한 無主의 田地를 個別的으로 承佃토록하고 일정기간이 經過한후 그 所有權을 承襲토록하여, 國家와 佃人間에 稅戶의 關係에 있도록 하는 경우였던바, 宋史 卷 173 食貨志 農田 紹興 26 年 3 月條에서

戶部言.. 蜀地狹人夥，而京西淮南膏腴，官田尚多，許人承佃，官貸牛種，八年仍償，並邊免租十年，次邊半之，滿三年與其業，願往者，給據津發。上曰.. 善。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그 구체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開墾資本은 政府가 補助하였고, 租稅 또한 일정기간동안 減免해주었다.

2. 歸業人을 위한 諸特惠

歸業人들을 위한 措施 역시 給田치 않는다는 사실을 除外하고는 無田의 流民에 대한 경우와 對等하였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 史例를 지적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첫째 種糧, 耕牛, 農器具의 貸與 사실을 들 수 있는바, 紹興 2 年(1132) 4 月 高宗이 兩浙路에 下詔하기를

收買牛具貸淮東人戶¹⁰⁾

라 하였고, 嘉熙 2 年(1238) 3 月 孝宗이 四川帥臣에게 下詔하기를

招集流民歸業，給種與牛優與振贍。¹¹⁾

라 하였으며, 宋會要, 食貨 1 農田雜錄 農田 2 乾道元年 2 月 17 日條에서도

忠州團練使知濠州劉光時言.. 濠州復業之民，皆無耕牛，若或失時秋，亦無望。乞支撥錢五萬貫貼借，民戶收買耕牛·種子，…… 詔令淮西總領所，支錢二萬貫，專充收買耕牛。

10) 宋史 卷 173 食貨志 農田 紹興 2 年 四月條.

11) 宋史 卷 42 理宋本紀二 嘉熙 2 年 3 月 乙亥條.

라하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 사례를 볼 수 있다. 두번째는 租稅의 免稅措處였던바, 이는 宋史 卷 27 高宋本紀四 紹興 4年 3月 己巳條에

蠲淮南州縣民租一年.

이라 하였고, 또 同書 卷 27 紹興 4年 9月 辛酉條에서도

…… 蠲襄陽等六郡三年租稅.

이라 하고 있는 사실들에서 그 구체적 史例를 볼 수 있다. 그 免稅의 期間은 일정치 않아 1년 혹은 3년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地域의 特性을 참작한 것이 아닐런가 고려된다. 한편 租稅의 免稅 期間이 經過된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租稅徵收의 猶豫, 혹은 減稅의 惠澤을 주었던 것 같으니, 그 사실은 宋史 卷 30 高宋本紀七 紹興 21年 正月 癸未條에서

以兩淮民復業未久, 寬其租稅

라하였고, 同書 卷 31 高宋本紀八 紹興 26年 3月 丁巳條에서도

詔兩淮邊民未復業者, 復其租十年.

이라한 사실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셋째는 上供錢 및 役錢에 대한 免稅措處였으니, 宋史 卷 27 高宋本紀四 紹興 4年 4月 丙戌條에서

…… 蠲淮南州軍上供錢一年.

라하고 있는 사실은 前者의 구체적 史例이고, 同書 卷 38 寧宋本紀一 開禧 3年 3月 丙子條에서

蠲兩淮被兵州郡役錢

라하고 있는 사실은 後者의 구체적 史例이다. 마지막으로 歸業人들의 노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의 職役 및 兵役을 減免해 준 사실이었으니, 그 사실은 宋會要, 食貨 69 逃移篇 紹興 5年 5月 27日條의

臣僚上言.. …… 其歸業者, 仍免本戶差役一年. …… 從之.

라고한 記述과, 同書 紹興 16年 8月 18日條의

利州觀察使知成州王彥言.. 契勘本州逃移之民漸復歸業, 而保正長等往往便打供進保甲, 遂使已歸者不能安跡, 未歸者不敢復歸, 欲望將歸業人戶下保甲候起催稅日許令進下. 從之.

라고한 記述에서 파악된다.

以上 歸業人들을 위한 南宋政府의 特惠措處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는 이들 歸業人들의 대부분이 戰亂의 禍를 避해 流移한 流民들이었던만큼, 政府의 特惠措處 없이는 復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3. 諸措處를 취한 理由

以上에서 無田의 流民과 歸業人들의 安住를 위해 南宋政府가 취한 諸措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本項에서는 南宋政府가 上記와 같은 諸措處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理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宋·金이 南北으로 對峙하고 있었던 100여년(1127~1234)의 期間동안, 金朝의 빈번하였던 南侵과 그 餘波로 각지에서 일어난 盜亂은 南宋朝로 하여금 그의 防禦 및 鎮壓을 위해 莫大한 軍事經費를 소모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여, 남송의 財政을 항상 窮乏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紹興5年(1135) 12月 權戶部侍郎 王偁의

兵革未息, 屯戍方興, 大計所入, 充軍須者十居八九, 此國用所以常乏, 當講究長策.¹²⁾

라한 上疏와 紹興30年(1160)年 12月 高宗 자신의

今天下財賦, 十分之八, 耗於養兵.¹³⁾

라는 言及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된다. 한편 軍事經費의 과다함에 따른 부담이외에도 南宋財政을 窮乏케하였던 諸要因이 存在하였으니, II章에서 참고될 수 있는 바와같이 流民振恤經費의 막대함도 그 한 요인이었으며, 金朝에 獻上된 歲幣額의 過多함 또한 그 한 요인이었다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長期間을 끌어오던 宋·金間의 和議問題가 紹興11年(1141) 11월에 이르러 일단 매듭지어진 이후, 약 80여년동안 南宋朝廷이 和議의 조건으로 金朝에 獻上한 貢物의 額數는 매년 銀으로 25萬兩(2次和議에서 20萬兩으로 감액, 3次和議에서 30萬兩으로 증액), 合計 2千萬兩以上에 달해 南宋의 貨幣金融制度를 破壞시킬 정도였기¹⁴⁾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要因은 官員俸祿額이 계속 增額되어진 사실이었으니, 이는 (도표 I)을 통해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즉 乾道年間(1165~1172)까지도 北宋 治平年間(1064~1067)文武官員數의 1/2에도 미달되었던 남송의 文武官員數가 그후 계속 증원되어 慶元2年(1196)에는 北宋官員數의 거의 2배에 달하였던 바, 俸祿額의 增額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12)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96 紹興5年 12月 辛亥條.

13)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187 紹興30年 12月 戊申條.

14) 王德毅, 略論宋代國計上的重大難題(宋史研究論集二輯 所收), 鼎文書局, 台北.

〈表 I〉 北宋과 南宋의 文武官員數

北 宋		南 宋	
景 德 年 間 (1004 ~ 1007)	10,000 人	乾 道 年 間 (1165 ~ 1172)	京朝官: 3~4 千人, 選人: 7~8 千人
皇 祐 年 間 (1049 ~ 1053)	20,000 人	紹 熙 2 年 (1191)	尙左京官: 4,159 人, 尙右大使臣: 5,173 人 侍左選人: 12,869 人, 侍右小使臣: 11,315 人
治 平 年 間 (1064 ~ 1067)	24,000 人	慶 元 2 年 (1196)	京 官: 4,159 人, 選 人: 13,670 人 大使臣: 6,525 人, 小使臣: 18,700 人

※ 洪邁의 「容齋隨筆」卷 4, 今日官冗條

이와같이 南宋財政은 次要인으로 인하여 항상 窮乏함을 면치못해왔다. 따라서 稅收額의 增額을 통한 財政擴充은 南宋朝의 絶실한 要求사항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재정수입에는 田稅收入이 상당부분을 차지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남송조의 이러한 희망사항은 쉽게 달성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金朝의 빈번한 南侵과 各地에서 일어난 盜亂들이 다수의 농민들로하여금 田畝과 家産을 버리고 他地域으로 流移토록하여, 南宋 領土內의 곳곳에 荒廢田을 散在시켜놓아 田稅收入의 減少를 招來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南宋時代의 耕作地 荒廢情形을 살펴보면, 唐과 北宋時 各種의 物産이 豊富하여 全國의 經濟上의 中心地였던¹⁵⁾ 兩淮(淮西·淮東)와 湖北地域의 경우 가장 深刻하였던 것같은데, 그 사실은 다음의 史料들을 통해서 理解되어질 수 있다. 즉 紹興 5年(1135) 8月 16日 都督行府言에

湖北·淮南自兵火之後, 百姓流亡, 田多曠土¹⁶⁾

라하고 있고, 嘉定 4年(1211) 正月 29日 左司諫 鄭昭先言에서도

窃·惟兩淮·荆襄(湖北), 實今日藩籬擇蔽之地. 淮東如山陽·滁陽, 淮西如濠梁·安豐, 荆襄如德安·位陽·壽羣, 流離之民未盡復業. 閒土·曠土不可以畝¹⁷⁾

라하여 上記 두지역의 農耕地 荒廢慘狀을 記述하고 있다. 그리고 紹興 30年(1160) 正月 淮南轉運判官兼淮南西路提點刑獄公事提領營田 張初言에서는

15) 全漢昇, 唐宋帝國與運河 「緒論及結論」(中口通史論文選輯(上) 所收), 台灣 學生書局, 台北.

16) 宋會要 食貨 12 戶口雜錄 紹興 5年 8月 16日條

17) 宋會要 食貨 60 恩惠 嘉定 4年 正月 29日條.

本路係官荒田共四十八萬餘頃，……兵火後民間無力修築，乞從本司支官錢修築開浚，……¹⁸⁾

이라하여 南宋政府의 開墾努力으로 그 面積이 減少되어졌으리라 예상되어지는 紹興 30年(1160)에 이르기까지도 兩淮地域의 荒田面積이 48萬餘頃에 달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南宋時 農耕地의 荒廢는 兩淮와 湖北地域의 境遇 가장 深刻하였다.

그러나 南宋時 荒田의 分布는 상기 두지역에 한하지않고, 적어도 乾道年間(1165~1173)以前까지는 揚子江以南 地域에도 상당면적 分布되어있었던 것 같으니, 그 사실은 乾道 4年(1165) 知鄂州 李椿이 上疏하기를

州(鄂州)雖在江南，荒田甚多，請佃者開墾，未幾便起毛稅，度田追呼，不任其擾，施即逃去，今欲召人請射，免稅三年，三年之後，爲世業，……¹⁹⁾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해되어진다.

이와같이 南宋時 荒田은 沿邊地域에 局限하지 않고 揚子江以南地域에도 상당면적 분포되어있었던 바, (도표Ⅱ)에서 보는 바와같이 各路에서 朝廷으로 보내는 上供米額의 減少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南宋조정이 流民들에게 給田하고 租稅를 부여하여 荒田을 재간토록하였던 것은 순수히 유민개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表Ⅱ〉 名 路 上 供 米 額

	北	南	宋
	上 供 米 年 額	上 供 米 年 額	上 供 米 實 額
淮 南 路	1,300,000 石	0	0
江 南 東 路	991,100 石	930,000 石	850,000 石
江 南 西 路	1,208,900 石	1,260,000 石	970,000 石
荆 湖 南 路	650,000 石	650,000 石	550,000 石
荆 湖 北 路	350,000 石	350,000 石	100,000 石
兩 浙 路	1,500,000 石	1,500,000 石	1,200,000 石
計	6,000,000 石	4,790,000 石	3,670,000 石

※ 梁庚堯, 南宋의 農地利用政策 (國立台灣大學文史叢刊) p. 65 ~ 66.

18)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184 紹興 30年 正月 壬寅條.

19) 宋史 卷 173 食貨志 農田 乾道四年條

IV. 兵員에의 充用

南宋의 爲政者들이 苦心하였던 또다른 問題중의 하나는 不足兵員을 如何히 增員 또는 充員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였다. 왜냐하면 異民族(특히 女眞)과의 長期戰에 대처해야 하는 狀況下에서 兵員의 多寡는 戰爭勝敗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國家의 存立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南宋의 兵士數를 보면, 玉海 卷 139 乾道軍額條에

乾道三衙·江上·四川大軍新額總四十二萬八千人, 殿司七萬三千人, 馬司三萬人, 步司二萬一千人, 建康都統司五萬人, 池州一萬二千人, 鎮江四萬七千人, 江州一萬人, 楚州武鋒軍一萬一千人, 平江許補水軍七千人, 鄂州四萬九千人, 荆南二萬人, 興州六萬人, 興元一萬七千人, 金州一萬千人.

라고 기술되어있는 바와같이 孝宗 乾道年間(1165~1173)의 總數가 438,000 人에 달한 것이었으나, 그 以前時代의 兵數는 이 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즉 宋史卷 187 兵志 禁軍條에서

建炎南渡, 收潰卒, 招羣盜, 以開元帥府, 其初兵不滿萬.

라하고 있고, 宋會要, 瑞理 1 祥瑞雜錄 紹興元年 7月條 高宗語에서

今若得歲豐人不乏食, 朝廷有賢輔佐, 軍中有十萬鐵騎, 乃爲祥瑞.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해되는 바와같이 高宗이 南渡한 初의 兵數는 萬名, 紹興 1年(1131)의 數는 10 萬에 未達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南宋의 敵國인 金은 本族(女眞族)은 물론, 被征服民에까지 簽兵하여 數多한 兵을 保有할 수 있었다.²⁰⁾ 그러므로 일단 有事時 南宋은 우선 金에 비해 兵數의 劣勢를 免치 못했다. 따라서 南宋의 爲政者들이 兵員의 增員과 充員에 苦心할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南宋朝에서 不足兵員의 增員과 充員을 위해 취한 措處중의 하나는 北宋以來 시행되어온 手段인, 流民중에서 신체 건강한 자를 募集, 兵員에 充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宋史 卷 28 高宗本紀五 紹興 6年 10月 丙申條에

招西北流寓人補闕額禁軍.

라하여 西北 流寓人을 招募해서 禁軍의 缺員을 補充하였다 하고있고, 同書 卷 30 高宗本紀七紹

20) 拙稿, 南宋流民에 對한 小考, (濟州大學校論文集 17輯.)

興 18年 3月 丁丑條의

命楊政·吳璘招關陝流民補殿前軍.

라한 기술에서 보는 바와같이 高宗이 楊政과 吳璘 등에 命하여 關陝流民을 招募하여 殿前軍의 缺員을 補充하라 하였던 사실들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同書 卷 39 寧宗 本紀二 嘉定 2年 10月 丁卯條에서

京湖制置司募逃卒及放散忠義以補廂禁軍關

라하여 京湖制置司가 逃卒 및 각지에 흩어져 있는 忠義人을 募集하여 廂·禁軍의 關額을 보충하였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南宋朝廷에서 不足兵員의 增員과 充員을 위해 求志 流民들을 招募한 理由는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당시의 兵員不足現狀이 심지어는 盜賊의 무리까지 赦免, 刺字하여 兵員에 充當하여²¹⁾야할이 만큼 深刻한 실정에 있었다는데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그 根本的인 原因은 다른 사실에 있지않았나 考慮된다. 즉 紹興 32年(1162) 5月 觀文殿大學士·判建康府 張浚이

兩淮之人, 素稱強力, 而淮北義兵, 尤爲忠勁, 困於敵人, 荼毒已甚, 讎敵欲報之心, 未嘗一日忘也.²²⁾

라고 高宗에 上奏한 내용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南宋 流民중多數를 점한 歸正人과 沿邊住民들의 경우 強勇·忠勁하며 항상 金에 대한 敵愾心으로 불타고 있었던 바, 이들을 軍에 充用하여 金과의 戰鬪에 내보낼 경우 기대 이상의 戰果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南宋朝廷의 念願인 故土收復도 기대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歸正인들이 戰功을 걸운 史例는 許多하였던 바, 아래의 史料들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 宋史, 卷 38 寧宋本紀二 開禧 3年 4月 癸丑條;
…… 四川忠義人復大散關.
- 宋史, 卷 40 寧宋本紀四 嘉定 11年 3月 戊子條;
利州統制王逸等率忠義人復皂郊.
- 宋史, 卷 40 寧宋本紀四 嘉定 11年 2月 丙辰條;
楚州鈐轄梁昭祖焚金人糧舟于大清河, 京東忠義副都統沈鐸追兵助之.

여기서 우리는 南宋朝廷가 流民들을 兵員으로 充用한 意圖가 어디에 있었던 가를 이해할 수 있다. 以上 南宋朝廷가 兵員不足을 충당키 위한 手段의 하나로서 취한 措處인 流民의 兵員으로의 充

21) 宋史 卷 36 光宋本紀 紹熙 3年 7月 己巳條: 刺沿邊盜萬人爲諸州禁軍.

22) 續資治通鑑 卷 137 紹興 32年 5月 癸亥條.

用 사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措處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流民救濟를 위한 對策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兵士들에게 給與된 錢·米의 額數를 계산해 보면, 그 額數가 본인은 물론 家族의 生計를 꾸려나가는 데에도 충분한 額數였기 때문이다.

南宋時 兵士들이 政府로부터 給與받은 錢米는 兵種과 階級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²³⁾ 本稿에서는 문제의 性格上 一般兵卒들의 俸給額數에 대해서만 言及하고자 한다.

南宋朝의 一般兵卒에 대한 給與는, 宋史 卷 194 兵志 廩給之制 宣撫使 韓世忠言에

本軍調發, 老幼隨行, 緣効用內有不調月糧, 不增給日請, 軍兵米二升半·錢百, 効用米二升·錢二百, 乞日增給贖米一升半.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같이 日給으로 「米二升半·錢百文」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 額數는 어디까지나 平日의 俸給量에 해당하는 額數이고, 出戍時에는 加俸錢米가 支給되었다. 加俸錢米의 支給에 대해서는 小岩井弘光氏의 研究結果²⁴⁾를 참고해볼 수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給與의 內容

北宋時代의 給與制度를 繼承하여 本俸으로 米·錢·春冬衣가 支給되었으며, 出戍時에는 加俸錢·米가 支給되었다. 加俸錢·米의 支給은 生券制와 熟券制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生券이란, 南宋初期의 分贖口券制의 弊端(本俸을 둘로 나누어 일부는 本人에게, 나머지는 家族에게 지급하는 方法으로 兵士나 家族 모두에게 生計의 위협을 줌)을 시정하기 위해 孝宗時代부터 本俸의 全額을 家族에게 支給하는 대신에, 兵士 個人에게 手當 形式으로 지급하던 것이었고, 熟券이란 生券의 支給以後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家屬과 함께 邊境地域에 거주하던 兵士들에게 本俸과 手當을 합하여 支給하던 것이었다.

② 給與方法

月給形式으로 支給하던 北宋時代의 制度를 바꾸어 日給形式으로 支給하였으며, 出戍時에는 現物의 휴대가 곤란하므로 일종의 證書인 口券을 支給하였다.

③ 給與量

- 本俸 : 米 2升 5合 · 錢 100文
- 加俸 { 生券 : 錢 30文 · 米 2升 5合
熟券 : 錢 200文 · 米 2升 5合

以上の 研究結果를 통해서 볼 때 南宋 一般兵卒들의 月給與量은 本俸으로만 米 7斗 5升·錢 3貫이었다. 이를 다시 衣川強氏에 의해 考究된 바 있는 당시의 米價²⁵⁾로서 米穀으로 환산해

23) 宋史 卷 194 兵志 8 廩祿之制: 諸軍月俸錢에 대하여 「諸軍自一千至三百, 凡五等」이라 하고, 糧米에 對하여는 「自班直而下, 將士月給糧, 率稱是爲差, 春冬衣有絹綿, 或加袖布絹錢」이라 함.

24) 小岩井弘光, 南宋大軍兵士의 給與錢米について, 東洋史研究 35卷 4號, 東洋史研究會, 京都.

25) 衣川強, 「官俸と俸給 - 宋代の俸給について續考」(東方學報 42册, 京都)에서 米一升의 價格을 ① 草創期(紹興末年以前): 30錢前後 ② 安定期(紹興末年~寧宗期): 12.3 ~ 24.5錢 ③ 衰退期(理宗以後): 50錢前後라 하였음.

보면, 초창기(紹興末年以前)에는 3.75石, 安定期(紹興末~寧宗期)에는 4.5~5石, 衰退期(理宗以後)에는 3石이 된다. 이 量은 당시 5人 家族의 生計를 꾸러가기에 충분한 量이었다. 더우기 加俸錢米의 支給을 받게 되면 오히려 淸족한 生計를 영위해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流民을 兵으로 充用한 사실은 流民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V. 貴正官 및 貴正士人을 위한 對策

南宋朝가 貴正官 및 貴正士人들을 위해 취한 措處중의 하나는 一般 貴正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田土 및 家屋을 支給하는 것이었으니, 그 사실은 宋史 卷34 孝宗本紀二 淳熙4年 4月 甲午條에

給歸正官子孫田屋.

라고한 사실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措處만으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流移民이긴 하였으나, 本來는 官僚나 準官僚의 身分이었던 만큼 오로지 農耕에만 몰두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길은 그들을 그들의 從前 官階에 相當하는 官職에 任用하는 것이며, 그들의 子孫들에게도 官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개방하는 것 뿐이었다.南宋朝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留意하여, 歸正官 및 그 子孫들이 희망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努力하였던바, 그것은 그들의 忠義心을 가상히 여긴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들의 이러한 욕구를 充足시켜주지 않을 경우, 그들이 그들과 함께 南移하여 各地에 散居하고 있는 貴正人들을 선동하여 南宋朝를 背反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念頭에 두었는지 모를 일이다. 사실 澧水郡의 忠義軍統轄로 있던 石珪가 寧宗嘉定13年(1220), 무리를 이끌고 背反했던²⁶⁾ 史實은 貴正官背反의 좋은 例였던 것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었건간에 南宋朝가 歸正官들을 任用한 史例는 宋代의 諸 文獻에 散見되고 있다. 그중 宋史 卷40 寧宗本紀四 嘉定11年 正月 壬午條에

京東路忠義李全率衆來歸, 詔以全爲京東路總管.

라하여 京東路 忠義人 李全이 衆人을 거느리고 來歸하자 詔書로서 그를 京東路總管으로 任用하였다 하고있고, 同書 卷40 嘉定17年 6月 壬辰條에서도

26) 宋史 卷40 寧宗本紀 嘉定13年 12月 壬申條; 澧水忠義軍統轄石珪叛.

大名府蘇椿等舉城來歸，詔悉補官。

라하여 大名府의 蘇椿 등이 城을 들어 來歸하자 모두를 補官하였다는 두 史料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다.

補官에 있어서는 歸依當時의 官階보다 1官階 혹은 2官階를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宋會要, 兵 15 歸正 紹興 4年 12月 8日條의

詔宿遷知縣張澤昨自僞(齊)境率衆來歸，忠義可嘉理宜旌賞，應所授僞齊官資，並特與補正，更與轉一官資，…….

라한 記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僞齊의 宿遷知縣 張澤이 무리를 거느리고 南來해오자 補正에 任用하였다가 다시 1官을 승진시켰던 사실과, 宋史 卷 40 寧宗本紀四 嘉定 16年 3月 戊申條에

張林所部邢德來歸，詔進二官，復以爲京東路副總管。

라한 記述에서 보는 바와같이 金의 官吏였던 張林이 麾下의 邢德人들을 거느리고 來歸하자 二官을 올려 補官하였고, 다시 京東路副總管으로 승진시켰던 사실들이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以上 南宋朝의 歸正官 補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러나 上記의 史例들만을 根據로 南宋朝가 歸正官 모두에게 官職을 주었다고 速斷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上記의 史例들은 南宋朝에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紹興 10年(1140) 9月 10日 高宗이 下詔하기를

河北·河東·京東諸路人民，本吾赤子，偶緣淪陷，遂致驅率與官軍鬪敵，應今後歸正之人，仰諸路帥司並加存撫，有官者還以官爵，仍加優轉，軍人百姓願從軍者，優補名目，厚支諸給，如不願從軍者，聽令自便，仍給與空閑田土·官借牛種耕種，蠲免役稅，各令安業。²⁷⁾

라하여 諸 歸正人들에 대해 그 身分에 合當한 對策을 마련하라고 했던 사실을 감안해볼 때, 가급적 모든 歸正官들을 補官하려 했던 南宋朝의 政策方向은 把握할 수 있다.

다음 士人들에 대한 措處는 그들로 하여금 學業에 專念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주어 州軍의 考試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紹興 32年(1162) 5月, 上(高宗)이 輔臣들에게 宜諭하기를

中原之民不忘祖宗涵養之德，相繼歸正者不絕。朕恐士大夫分南北，彼此寢失招來之意。卿等可審處，如有能辨事者，與沿邊諸州軍差遺，士人願入學者，從便教養，及令應舉²⁸⁾。

27) 宋會要, 兵 15 歸正篇 紹興 10年 9月 10日條.

28) 宋會要, 兵 15 歸正篇 紹興 32年 5月 27日條.

라한 사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科擧應試가 許諾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정확한 時期를 알 수 없으나 宋史 卷 26 高宗本紀三 建炎 4 年 5 月 癸亥條에

詔中原·淮南流寓士人, 聽所在州郡附試.

라하고 있는 바, 高宗 南渡初부터 이미 歸正士人들의 科擧應試가 許諾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留意할 사실은 宋史 卷 31 高宗本紀八 紹興 26 年 2 月 己卯條에

定諸州流寓士人解額.

라고 보이는 바와같이 科擧合格者의 數에 있어서는 制限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乾道元年(1165) 7 月 8 日 禮部에서

……歸正人令所在州軍赴今秋解試, 其取人分數, 依昨流寓人例施行. 契勘, 流寓人試凡及十五人解一名, 餘分或不及十五人, 亦解一名.²⁹⁾

라고 孝宗에게 건의한 사실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及第者의 數를 制限하였던 이유는 이들 歸正士人들이 大學 官界에 進出할 경우 政治版圖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는지 모를 일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官界進出의 許容은 제한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VI. 結 語

南宋의 爲政者들은 流民을 定着시키는 문제에 至大한 關心을 가져왔다. 그 理由로서 南宋朝廷이 儒敎思想의 影響을 받은 文人들로 構成되어 있었던 만큼, 그 政治措施에 仁思想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점도 考慮되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諸要因, 特히 對外關係로 말미암아 數多한 流民이 續出하였던 바, 그들을 적당한 곳에 安住시켜 살터전을 마련해주지 못할 경우 叛徒化하여 國家의 安寧을 해칠 가능성을 보다 念慮하였던 것이다. 한편 流民問題가 당시의 政治·經濟·社會·國防 等 諸 方面과도 密接한 관계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關心을 보였던 것이다.

남송조의 流民對策은 暫定的인 措施과 恒久的인 對策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暫定的인 措施의 內容으로는 食糧 및 衣服의 無償支給, 醫療惠澤 그리고 死亡者를 위한 度牒의 支給 等으로 要約되는데, 이는 以前의 朝代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流民對策이었다.

다음 恒久的인 對策으로는 우선 無田의 流民에게 田地를 支給하고 諸惠澤도 아울러 提供하였

29) 宋會要, 兵 15 歸正黨 乾道元年 7 月 8 日條.

던 사실이 지적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그 所有權의 歸屬與否와 經營方式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所有權이 官에 있어 정부당국에 의해 직접 경영되던 官莊田과 軍莊田의 支給의 경우, 100畝의 耕作地와 10畝의 菜田을 기본으로 給田하였고, 耕牛·種糧·農器具·住屋·倉庫등의 무상지급, 그리고 영농자금대여 등의 特惠 또한 겸해서 제공되었다. 이 경우 租課는 次年의 種子를 제외하고 官과 佃人間에 반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官對 佃人間의 배분비율이 4:6인 경우도 있었다. 그 組織은 5家를 一甲이라하여, 그중에서 1人을 甲頭라하여 甲內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다시 監莊을 두어 莊內의 제반사무를 통할토록 하였다.

官田化한 無主의 土地를 個別的으로 承佃토록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그 所有權을 承襲토록하여 國家對 佃人間에 稅戶의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개간자본은 국가에서 보조하였고, 租稅 또한 일정기간 동안 減免해 주었다.

歸業人들에 대해서도 前者와 마찬가지로 耕牛·種糧·農器具 등의 貸與조치를 취하였고 各種稅金을 減免해주었으며, 職役·兵役까지도 減免해준 例가 있었다.

남송조가 유민들에게 상기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수 밖에 없었던 理由는 금의 빈번한 침입과 그의 여파로 일어난 盜亂들에 기인한 농민들의 대거 타지역으로의 流移가 각지에 荒田을 散在놓았던바, 그들 황전의 개간이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당시 남송조에는 군사비의 증가, 관료봉록액의 증가, 金朝에의 歲幣額의 부담등 국가 재정을 궁핍케 하는 要素인 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황전개간을 통한 세수확보가 당급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兵員에의 充用 조치였으니, 이는 당시 金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敵에 비해 우선 兵數의 열세를 면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더우기 유민의 대다수가 북에서 남이해온 귀정인들과 沿邊地域주민들이었던 만큼 이들은 忠勤하고 金에 대한 敵愾心에 불타고 있어 이들을 兵에 充用하여 金과의 戰鬪에 내보낼 경우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남송정부의 숙원인 故土收復도 기대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南宋朝가 이들을 兵員에 充用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한다면 流民對策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當時 一般兵卒들에게 지급된 봉급의 양은 本俸으로만 日給으로 米二升半·錢100文이 지급되고 있었고, 出戍할 경우 加俸錢米가 지급되었으므로 본인은 물론 家族의 生計를 꾸려나가는 데에 충분한 양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歸正官 및 貴正士들에게도 일반 귀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田地 및 家屋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들이 본래는 官職에 있었던 신분이었었던 만큼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종전 官階에 相當하는 관직에 보관하는 것뿐이었다. 남송조는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여 그들을 가급적 보관하려고 하였다.

다음 士人들에 대해서도 가옥 전답을 주고 있으며 특히 그들에게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길

을 열어주어 과거에 응시 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解額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대거정계에 진출하였을 경유야기될 문제를 고려하여서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Summary

On the Southern Sung's Policy for Displaced People

Kim Yong-wan

The administrators in Southern Sung feared that if proper measures were not carried out, the displaced people would revolt and disturb the peace. Therefore they enacted the policy to settle these displaced people.

The policy can be described in two parts: one(I) are temporary steps and the other (II) long-term steps.

- I. The first steps were the ones such as free distribution of food and clothing, medical services, and funeral articles, etc.
- II. 1. Lending of arable land and bestowing of some favor: (e.g. exemption from taxes and public labor, endowments of seeds, farming tools, and cattle)
2. Employment as a soldier.
3. Appointment of Kue Cheng Kuan from the north to public offices

This policy mentioned above was beneficial not only for the displaced persons but for Southern Sung government herself in that Southern Sung government could increase her financial power by letting them cultivate waste lands and could increase her military personnel.